

판례로 본 건설분쟁

자료제공 / 『알기쉬운건설분쟁사례해설집』 건설경제신문사주

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2003다60136 판결).

입증책임

쟁점	공사완성의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판단	지체책임을 면하려는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급인의 입증책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문), 이러한 이유로 수급인이 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수급인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도 아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급인에

지체상금의 과다여부의 판단기준

쟁점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체상금의 과다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법]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고 다시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어떤 의미이고,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점에 관해서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95다24975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①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④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⑤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⑥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소송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사실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감액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준시점]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판례]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4536 판결)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

자료제공 /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담보제공 비율 과 현금공탁 여부

Q 각종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있어 담보제공의 비율과 현금공탁 여부?

A 현재 법원에서는 실무에 의하며, 피보전 채권의 존재 확실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둘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가압류 : 청구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 * 유체동산 가압류 : 청구금액의 4/5에 해당하는 담보(그 중 절반은 현금)
- * 채권 :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담보(가압류하려는 채권이 임금, 영업자 예금채권에 대한 경우는 절반은 현금)
그밖에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 * 부동산의 경우 : 목적물 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보험보증증권
- * 유체동산의 경우 : 목적물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 * 채권의 경우 : 목적물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 부동산의 경우 목적물 가액의 1/20, 유체동산의 경우 1/5

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책임

Q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중 하도급업체의 직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

A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도중 하도급업체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인 하도급업체의 직원과 그를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연대채무와 거의 동일함)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서에서 특약사항으로 하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서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그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만일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에 의하여 전보받을 금액에 한하게 되고, 이는 통상적인 실화자 또는 그의 사용자의 책임 범위보다 크지는 않게 된다. 